
입 법 정 보

2016-6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6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7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7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7
5.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8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8
7.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9
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
10.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11.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11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
1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14.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15.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
1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1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18.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3
1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4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5
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7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8
2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2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2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2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0
30.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
3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21
3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2
3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3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3
3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24
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25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25
3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6
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6
4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7
4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29
42.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0
4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31
4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32
4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3
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4
47.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34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5
4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7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7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8
5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9
5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0
5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0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2
5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2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3
5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4
5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4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4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45

6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46
6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46
6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47
6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47
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48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49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9
69.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50
70.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51
7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52
7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52
7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54
7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57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57
7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8
7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8
78.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59
7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60
8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0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실)	60
8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61
8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1
8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62
8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62
8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63
8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63
88.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4
8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64
90.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64
91.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일부개정(안) (교육부)	65
92.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5
93.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일부개정(안) (교육부)	66

94.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6
95.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67
9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67
9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68
98.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68
9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69
1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69
10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70
1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70
10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1
10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71
106.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2
1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3
1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74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5
11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6

정부입법예고 (2016.02.15.~03.08.)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8.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고,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M&A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안 제3조제3항)
 - 1)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임을 이유로 중소기업에 제외하고 있으나, 현제도상 영리가 아닌 비영리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 중소기업 인수시 유예기간 부여(안 제9조제2호)
 - 1) 현재 자산 5천억원을 넘는 기업은 유예기간을 3년 부여하고 있으나, 그 회사의 자회사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형평성에 문제.
 - 2) 자산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한 경우, 피인수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인수부담이 완화되어 M&A 및 회수 시장 활성화 기대
-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제3항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 2) 전문연구기관의 사업 및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및 기능, 운영 내실화를 도모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8.
- '16년 경제정책방향 내 규제프리존 도입 계획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출원된 특허의 우선심사신청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6.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는 업종에 일반게임제공업을 제외(안 제16조·제17조, 별표4, 서식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5)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며,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법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의 범위를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4)

5.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8.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확히 하고,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등의 게시 및 장부비치 의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기술사법」(법률 제13514호, 2015. 12. 1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시행령에 기반영된(' 14.11.28 개정, 영 제4조의2제2항)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 기술사사무소의 장부비치 의무조항의 삭제로 기술사사무소가 갖추어야할 장부관련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4조)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2. 25.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한 규제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는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일몰 기한을 재설정 하려는 것임

○ 일몰 기한의 재설정(안 제25조 제2항)

2016년 2월 23일로 규정된 일몰 기한을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함

○ 월 결제한도 및 1회 베팅한도 상향(안 제17조 별표2 8호 가목, 나목)
게임물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하고 1회 베팅€yL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함

○ 이용금액의 한도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 별표2 8호 다목)
가목 결제한도 상향에 따라 1일 손실한도를 가목의 3분의 1에서 가목의 5분의 1로 기준을 정비

○ 이용자의 상대방 선택금지의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별표 2 8호 라목)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함

○ 본인확인 기간을 연장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바목)
공인인증기관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기간을 1년에 1회로 개정함

○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함(안 제18조 별표 2 8호 사목 신설)

게임제공업자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하여야 함

7. 기술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8.

-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5.8.11)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3)

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2. 19.
- 병무청 소속기관으로 사회복지무연수센터를 신설하고, 지방병무청에 기록물 관리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및 사회복지무연수센터에 신편되는 부서별 업무를 정하기 위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07.
- 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승인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국유지 내의 미등재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제6항·제7항·제8항, 제6조, 제8조제3항)
- 적합확인(안전 및 피난규정) 관련사항을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5호)

10.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2. 15. • 마감일자 : 2016. 03. 28.
-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381호, ‘15.6.22 공포, ’ 16.6.23 시행)됨에 따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1.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3. 28.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특허지원창구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 등을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요건 강화(안 제8조의6 신설 및 별표5 개정)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9 신설)
 - 1) 인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
 - 2) 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3) 인증업무 운영기관 지정기준을 정하고 지정 시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동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이율을 정하려는 것임
-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8%로 정함

1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인하하고,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함.
- 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탁송품 취급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 주선 실적 요건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이 월평균 5만 건 이상으로 정함
-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내국인 구매한도(미화 3,000 달러)를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함.
- 법규준수도 측정·평가의 활용 범위를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과징금의 산정, 행정제재 처분의 감경으로 정함.
- 관세 등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함

14.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세무사 징계요구서 및 세무대리업무등록증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것임

15.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주정소매업 면허 신청 시 납부할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업면허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담배의 반입사실 및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증명서류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허가를 받은 자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1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식의 작성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 즉시 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18. 농·축산·임·어업용 기지제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세척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면세유 관리 강화를 위해 보유현황 신고 단축 대상(2년→1년) 어업기계에 어업용 경운기와 어업용 트랙터를 추가함
- 어민의 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계에 어망

세척기를 추가함

1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것임
- 최근 시중금리의 인하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2.5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조정함.
- 가축두수에 따라 매입액이 비례하는 도축업 영위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가축두수 비율로 안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함

2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주유소 신용카드 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고 현행서식 일부를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영 별표 제101호에 따른 주유소의 신용카드 등 결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 별표 제57호, 58호에 과세표준을 추가하여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자료활용성 제고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동시에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범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 상의 재화거래·용역거래·대여 및 차입거래’로 함.
- 통합기업보고서는 제출대상자 및 제출대상자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회계기준상 동일한 연결대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함.
-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지배법인인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명확히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법령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함
- 현재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의 각종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법령화하는 한편, 금전 무상대출시의 적정이자

을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의 이자율을 각각 기준지표 변동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함

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 대상인 사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 사용범위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여부 판정시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입국의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관광, 치료, 병역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입장권,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함
- 종교단체가 소유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는 이익을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함
-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간 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2.5%에서 1.8%로 인하하고자 함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상한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바, 그 배율을 3.0에서 3.2로, 간편장부대상자는 2.4에서 2.6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KOSPI200선물’, ‘미니KOSPI200옵션’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 물가연동국고채의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금증가분은 채권의 액면가액에 물가연동계수의 차이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함

24.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와 관련하여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며,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에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인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1)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정함
 - 2)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 전기사업자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유통업자가 신·증축한 유통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 제상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2.5%에서 1.8%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6.9%에서 4.6%로 각각 인하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자가 친수구역내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현물출자시 독립된 사업부분의 요건 중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1)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50% 이상 여부로 부동산임대업의 주업 여부를 판단함
 - 2) 부동산 등 비율계산시 현물출자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분이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제외함
 - 3)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으로 함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 시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규제도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을 별도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요건을 규정함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난임 시술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로 규정함
-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요건을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주식 시장조성자 및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각각 시장조성에 따른 주권의 양도거래 및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수헤지거래, 매도헤지거래로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 및 거주자 특례 대상을 규정함
- 투자세액공제 신청 관련 투자자산 명세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및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관련서식을 신설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결정통지서에 장려금 산정시 감액사유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2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지방국세청장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허사업제한요구서 서식을 개정하고, 채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제도가 신설되어 관련 서식을 개정함

2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2. 26.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2.5%에서 1.8%로 조정함

2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2. 17. • 마감일자 : 2016. 03. 08.

-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으로 폐지된 「가맹사업진흥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진흥심의회 폐지(영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정비 및 삭제)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영 제7조)

29.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2. 17. • 마감일자 : 2016. 02. 22.

-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청소년정책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관련 사무의 소관부서를 가족지원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조정하려는 것임

30.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17. • 마감일자 : 2016. 02. 22.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등에 따른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신선한 양파 기준 20,645톤에서 70,645톤으로 늘리는 등 16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1. 향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2. 17. • 마감일자 : 2016. 03. 28.

- 2종 향만배후단지는 향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민간 자본금으로 개발 및 토지취득·분양이 가능하나, 향만배후단지 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동일한 1종 향만배후단지는 정부·지자체 및 향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일괄 개발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1종 향만배후단지는 정부·지자체 및 향만공사에서 개발한 부지를 물류기업 등 민간기업에 임대(최장 50년)하고 입주 민간기업은 임대 부지에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창고업 등의 건축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화물 및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민간에서는 1종 향만배후단지에 대하여도 토지취득 및 분양을 전제로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추진이 되지 않는 등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배후단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하여 1종 향만배후단지도 민간 자본금으로 개발·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2종 향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부담 원칙, 비용의 보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청문 및 벌칙 등을 1종 향만배후단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종 향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을 위한 향만재개발 절차 준용(안 제46조의2 개정)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반영(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준용)

지방자치단체, 향만공사, 민간투자자 등이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해수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해수부장관은 제안을 반영하여 향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제55조 준용)

해수부장관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향만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을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제59조 준용)

향만배후단지사업시행자가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제60조 준용)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 제3항 신설)

○ 비용부담원칙 등을 1종 향만배후단지도 적용

2종 향만배후단지에 적용되는 비용부담원칙,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벌칙 등을 1종 향만배후단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2. 18. • 마감일자 : 2016. 03. 09.

○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사유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 (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

-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

○ 어린이집 휴원 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안 36조의2)

-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휴원기준을 신설하고 휴원시 조치사항으로 휴원계획 수립 및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

○ 어린이집 운영기준(안 별표8)

-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별표9)

-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2. 18.
- 마감일자 : 2016. 03. 29.

-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적용 시 지목 적용방법 및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호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시설이 30%이상 증설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신고대상 요건 완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처분 당시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처분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지목 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지목을 적용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 토양오염대책기준 지목 적용을 토양오염우려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별지7호, 별지 7호의2 :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용이 폐지된 관측공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관련 규정 삭제

3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산업자원통상부)

- 예고일자 : 2016. 02. 18.
- 마감일자 : 2016. 03. 29.

-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 인테리어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전문 부처에 의한 통합관리를 위해 자동차용 창유리·자동

차용 정지표시판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
에 따라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서 동 자동차용품을 제외하는 등 기
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전인증 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의무화 (안 제8조제3항·제5항, 제9조제2항, 제19조제2항)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안전인증서에 제품검
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한 경우, 시험·검사성적서가 포함
된 안전성검사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공산품 신규 지정 및 삭제(안 [별표2], [별표3])

야외 운동기구를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인테리어필름·스
포츠용 고글·난방용 텐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하
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 예정인 자동차용 창유리·자동차
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서 삭제

- 공산품 모델구분 기준 변경(안 [별표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
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모델구분을 삭제

3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02. 19. • 마감일자 : 2016. 03. 30.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통한 사업
시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
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6. 02. 19. • 마감일자 : 2016. 03. 30.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통한 사업 시행의 적시성 제고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신속한 검토·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제7조)

1)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 삭제

2) 문화재 관련 전문가 3명 이상의 검토회의를 통하여 보존조치를 명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제13조)

1) 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출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굴완료 보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37.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2. 19. • 마감일자 : 2016. 03. 10.

-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개선(안 제18조제2항)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함

38.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2. 19. • 마감일자 : 2016. 03. 31.

- 기업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할인을 도입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여 소방제품 안전성 확인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형식승인의 변경에 해당하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조항으로 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안 제9조)
- 성능인증의 변경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 및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신설)
-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검사의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제품검사의 수수료 할인율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43조)
-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취득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단축

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2. 19. • 마감일자 : 2016. 03. 30.

-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형집행법 제88조)는 이미 수형자의

지위로 인해 크게 위축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 속에서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므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 12. 23.자 2013헌마 712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규정을 준용(제88조)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의 사복착용 근거를 마련함.
-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 명확화(제2조)
현행법상 “수용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의 포괄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함
- 위생·의료 관련 용어 정비(제3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개정)이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취지에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4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2. 22. • 마감일자 : 2016. 04. 04.
-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호대상 편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출연금 산정기준을 납입자본금에서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부보 제외(안 제2조제3항 신설)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채무증권 등 채권의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거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매매에 한정하여 중개업 인가를 받은 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함
-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등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3항제3의2호, 제5호 신설 및 제4항제1의2호 신설)
증권금융회사의 부보 제외 예금을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부보 제외 예금과 동일하게 하고자 현재 금융투자회사에서 보호되지 않는 파생상품예탁금, 청약증거금이 증권금융회사의 부보예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입법취지와 달리 보호대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확정급여형퇴직보험을 부보예금에서 명확히 제외함
- 출연금 납부대상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영업중인 금융회사가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로 신규편입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기금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금융회사, 정리금융회사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되,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신규편입으로 보아 납부 예외대상에서 제외함
- 출연금 산정기준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4항)
출연금액 산정기준을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 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으로 정함으로써 금융 회사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방법 추가(안 제15조의2 신설)
부보 제외 예금자(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를 보험 관계 설명의무 제외 대상자로 명시하고, 전자우편·전자서명 등 법 제29조에서 정한 설명 방법 이외의 방법을 명시함
-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의 예금보호대상 편입에 따른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일반 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보충준비금)」과 일반 보험의 수입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특별계정으로부터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전(최저보증비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부과 기준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 기준 체계와 일치토록 함

- 과·오납 예금보험료의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안 제16조제5항 신설 및 제16조의4제5항 신설)

부보금융회사가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예금보험료와 특별기여금을 환급할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정한 이자율로 함

- 경영정상화이행약정 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사의 보유 지분율, 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경영정상화이행 약정 중 수익성 지표 3가지 중 일부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제26조 및 별표 3)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된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한 과태료 및 보험관계 설명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

- 금융투자업 겸영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본업 기준으로 일원화(안 별표1)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업 관련 부보예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납부기준을 본업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부보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위험도에 따라 설정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꿈

41.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2. 16. • 마감일자 : 2016. 04. 04.

- 방송법(법률 제12677호, 제13220호, 제13821호) 개정에 대한 후속조

치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안 제61조, 제63조의2, 제68조, 별표 4), 디지털방송 표준 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8조)

-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설비개선명령(제81조)과 전송망사업자의 약관신고 의무(제82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상 관련 내용(제63조의2 및 제68조)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업자의 디지털방송 표준음량기준 위반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유예기간이 만료됨('16.5.29)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방송법 시행령상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및 별표 4)
- 디지털방송 표준음량 준수 사후관리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안 제68조)

42.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2. 23.
- 마감일자 : 2016. 0. 04.

- 「평생교육법」 공포(' 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운영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습비 반환 사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비 반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문해교육 대상자들의 문해교육 기회 확대 및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실습시간을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 (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신설)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영 제67조의5 신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 범위와 내용,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문해교육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영 제70]조제1항제1호 개정)
농어촌 지역 등에서 문해교육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과목별 교사자격 소지자에서 대학 졸업자중 관련 교과 전공자로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 (영 제70조2 신설)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진흥원, 시 도진흥원에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학습비 반환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제23조 제1항 삭제 및 별표 9 제2호카목 신설)
학습비 반환사유의 법률 상향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 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 완화 (규칙 제22조제3항 개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시설 설비 기준은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 도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 실습시간 명확화 (규칙 별표 1 개정)
실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현장실습에 부합하게 현장실습의 최소 이수기간, 총 이수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4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2. 23. ● 마감일자 : 2016. 04. 04.

-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여건을 개선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방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강화하며, 공동주택의 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차단기 등으로 인해 소방자동차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노인복지

- 주택 관련 규정을 삭제(안 제7조제8항,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배치, 공장 등과의 이격거리,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안 제7조제10항, 안 제25조제5항)
 - 단지 내에 문주 또는 차단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을 완화(안 제25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4호)

4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3. 15.
- 공공데이터의 정의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대상 중에 하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로 위임함에 따라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전자기록물을 구체화함
- 민간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세부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민간과 유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시정권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자료의 요구 및 이행점검과 점검결과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 세부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 안 제

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수준평가제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 내역관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공공데이터 관리에 노력의무를 부과함

45.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05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 「5·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1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610호, 2015. 12.22. 공포, 2016. 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진료비용 일부분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다목, 라목 및 바목)
- 진료비용 “일부분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에 장애등급이 경도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해등급이 12급 내지 14급인 5·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를 신설함
- 감면진료대상 유·가족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라목 및 바목)
- 감면진료대상의 유·가족등의 적용 대상 범위를 5·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모든 유·가족에서 가족 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함.

-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 추가(안 제15조제1항제3호)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응급진료 사실을 통보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도록 함.

4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3. 1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7.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3. 02.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2월 21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4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부과대상물품 :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별표 관세율표상 번호 4412.39호 또는 제4412.99호)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의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
- 덤핑방지관세율 :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4.22%,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6.97%, 궈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73%,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2%,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5.33%,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 7.15%
-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적용기간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4년간임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기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장애정도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

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3605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압류금지 금액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상이자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장애등급이 정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 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장애등급이 정도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함.

○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시설 확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부분 월납전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요양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4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9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군인의 참전사실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절차 개선

군인신분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참전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직접 국방부장관등에게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함.

○ 참전명예수당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참전명예수당 중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

참전유공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6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확대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함

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인)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

해 발급하고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희생·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0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상이등급,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 1) 상이등급 6급 미만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 2)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 경상이자의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상이등급이 7급인 특수임무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5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5·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1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5·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공헌 정도,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11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 지원 대상 장애등급,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 1) 장애등급 11급 미만자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함
 - 2) 교육지원 대상자가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국내 동급학교 수업료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하되, 지급액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 장애정도를 고려한 자녀의 취업지원 실시 및 횟수 조정
 - 5·18민주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강화 등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하여 장애등급 11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과 국가기관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함
- 경상이자의 진료비용 일부 본인부담 비율
 - 장애등급이 12급부터 14급까지의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함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 5·18민주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도록 함

5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지정취업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삭제된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기준에 준용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가 삭제(‘12.6.27)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질병·장애·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신청절차 등을 정함
-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독립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를 보조하도록 함

5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

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금과 지출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6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 법률 제13697호, 2015.12.29. 공포, 2016.7.1. 시행)됨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의 압류금지 금액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의 우선 공급 가구수 등에 대하여 주택 공급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공급 대상자는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

하도록 함

○ 6·25전몰군경자녀의 수당액 결정

1998년 1월 1일 이후에 6·25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 유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자녀 1명에 한해 월 114천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녀(생활조정수당 수급자)가 있으면 월 114천원을 추가 지급함

6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주체 변경사항,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계획에 관한 설명회, 공청회 등을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법률 제13699호, 2015.12.31. 일부개정, 2016.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자격 등을 반영(안 제2조 신설)
- 주민지원사업비 정산기한(안 제11조 신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에 따라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시 주민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실시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6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2. 24. • 마감일자 : 2016. 04. 04.

-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의 설정,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

- 방음 및 냉방시설 보수·재설치 기간 명시(안 제6조 개정)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 지역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착륙료 수익 사업비의 범위를 소음대책 대상공항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개정).
-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청구지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설치제한 대상지역 병행 조정(안 제4조 별표 1 개정)

6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3. 17.
- 현행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을 현장출동 시 방화복 안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외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일부 폐지 및 소방화 소방모 등 명칭 변경을 통하여 소방복과 소방화 소방모의 명칭을 일원화 하고자 함
- 일부 착용빈도가 낮은 소방복 폐지와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등)
 - 1) 착용빈도가 낮은 체력단련복·체력단련화와 수난구조반바지·수난구조활동화는 폐지 함
 - 2) 기동화를 활동화로, 훈련화를 기동화로 하여 활동복에는 활동화를, 기동복에는 기동화를 착용하도록 명칭 일원화
- 활동복 착용 시기 완화(안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정한 활동복 착용기준을 삭제함
- 용어변경(안 제11조제2항제2호)
소방검사를 현행 법률상 정의된 소방특별조사로 용어변경

6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6. 02. 25. • 마감일자 : 2016. 03. 07.

- 인삼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인삼류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삼류 검사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삼류 수출확대를 위해 면세점 판매시 허용하고 있는 ‘절편’ 인삼 등급 표시 규정을 ‘절삼’ 까지 확대 적용(제18조의3 제1항)
-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삼의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18조의4 제2항)
 - 1) 과학적인 실험·분석자료를 토대로 인삼류검사기관장 또는 자체 검사업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홍삼 품질기준에 황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황피’에 대한 정의가 없어 신설(별표2)
- ‘인삼류 검사의 기준·방법’의 연근기준중에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를 삭제하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판별하도록 함
- 홍삼 등의 품질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별표 3의 2)
 - 1) 홍·흑삼의 천삼·지삼 등급의 다리를 몸통길이의 3/4에서 몸통길이의 1이하인 것으로 양삼등급 조직의 내벽 몸통길이를 몸통직경으로 함
 - 2) 홍삼본삼·흑삼본삼 특대편란에 ‘5지’를 신설하고 개체당 60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날개포장 등이 가능하도록 함
 - 3) 표시검사 항목(중량, 편급, 뿌리수)중 ‘편급’을 삭제
- 검사의 기준·방법에서 개별검사기준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없어 처분기준 신설(별표4)

6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신림청)

- 예고일자 : 2016. 02. 25. • 마감일자 : 2016. 04. 05.
- 「국유재산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산정 방법이 일부 달리 규정되어 있어, 각 법에 따른 대부지 관리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임업소득사업용 대부료 산출 방식 개선(안 제21조제1항제1호)

경작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을 준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임업소득사업용 대부지등의 대부료 등은 해당 재산가액에 용도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최근 공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2. 25. • 마감일자 : 2016. 04. 05.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부여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국·공립 교원에 대해 적용(교육공무원법 개정, '16.1.27)되는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한 무급 휴직(안 제59조제1항제12호) 육아휴직 가능시기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확대(안 제59조제1항제7호)

6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2. 25. • 마감일자 : 2016. 03. 16.

- 심야시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추진함
- 심야시간 구역운송사업 한정면허 도입(안 제1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시간대에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한정면허 허용
- 심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시 규제 완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기존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운송

사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입찰 절차 없이 한정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의 종류 확대(안 별표1)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69.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2. 25. • 마감일자 : 2016. 04. 05.

- 「환자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3113호, '15.1.28. 제정, '16.7.29.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2조에 따라 위해를 구체적으로 정의(안 제2조)
- 법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설치 대상 등의 사항을 정함
 - 1)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500병상 미만 이상의 종합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2) 환자안전위원회는 법조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의 외부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법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 1)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500병상 미만 이상의 종합병원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2)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1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의사 또는 간호사인 전담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법 제13조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이하 “환자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위탁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1) 환자안전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자료를 심사하여 교육위탁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2) 신규 배치된 전담인력은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신규 교육 이수 후 1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하는 교육비를 교육위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3)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계획을 복지부장관에게,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 법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보고자, 보고 내용, 보고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함
- 1)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6조)
 - 2) 자율보고 시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일시 및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17조)
 - 3) 보고자는 환자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받은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주의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 1) 시스템운영기관의 장은 자율보고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20조)
 - 2) 주의경보 발령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밖에 주의경보 발령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 법 제17조에 따른 검증은 자율보고가 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해 수집한 자료에 대해 보고자 또는 환자안전지표 자료를 제출한 단체 및 기관의 확인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2조)

70.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2. 25. • 마감일자 : 2016. 04. 05.
- 「환자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3113호, ' 15.1.28. 제정, ' 16.7.29.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2조에서 제10조)
- 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11조)
-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에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환자안전 사고의 접수·관리 및 자료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 2)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7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4. 0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 위원의 비리예방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반영하려는 것임 (* 법률 명시 조치: 시행 2016. 8. 12.)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7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4. 06.

-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 및 직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법 개정예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함(안 제3조의3 및 별지서식 개정)
 - 1) 수시 재산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 및 요청과 관련된 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정기변동신고 뿐만 아니라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 및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존서식을 개정함
 - 3) 이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법 개정으로 백지신탁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서식 등을 마련함(안 제12조의2제8항 및 별지서식 신설).
 - 1)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 담당직무, 세부 관여사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및 신탁 주식 등을 기재하여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직무관여사실 신고 서식과 현재의 담당직무와 보유 주식과의 직무관련성 등을 표기하여 직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직위변경 신청 서식을 신설함
 - 3) 이를 통해 백지신탁 주식 관련 직무회피 제도 및 직위변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
- 시행령의 선물신고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별지서식 신설)
 -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제도의 신설

- 이 추진됨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 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 국외출장 및 외국인사 접견 내역, 선물수령 실적 등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사항 통보하는 서식을 신설함
- 3) 이를 통해 선물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함
-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12조의2제7항 및 별지서식 개정)
 - 1) 공직유관단체 현황 통보시 재정현황을 명확하게 통보할 수 있도록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2) 기존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사유서 서식을 개정하여 매각 및 백지신탁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함

7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4. 06.
- 재산등록·신고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법률 제 13695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기간을 규정하고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안전 및 경제 질서와 관련되어 청렴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의무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 회피 및 해임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무역금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 (안 제3조제4항)
 - 1) 수출무역금융 및 철도시설물 납품 관련 비리사건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때, 수출무역금융 및 철도시설물 관리 분야 업무수행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무역금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임원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함

- 3) 해당 분야의 뇌물수수, 유착과 같은 비리 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함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기간을 규정함 (안 제5조제1항)
 - 1)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시 재산등록·신고 시에도 금융거래 정보와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2) 수시 재산등록 신고(최초등록, 퇴직신고, 공개대상자로 전보 승진시 신고, 의무면제신고)시 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3) 재산등록의무자가 수시 재산등록·신고시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함 (안 제18조의3)
 - 1) 위원이 정상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임 해촉이 필요하나 그 규정이 미비하였음
 - 2) 심신장애, 비위사실의 발견,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을 확대함 (안 제27조제1항)
 -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수시 재산등록 신고 기간이 기존의 1~2개월에서 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도 이와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퇴직신고 및 의무면제 신고시에도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등록 신고 시에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 기간을 1개월로 통일함
 - 3) 고지거부 허가 신청 기간을 통일하고, 모든 재산등록 신고시에도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백지신탁 중이던 주식이 처음으로 매각된 경우, 이를 통보·공개하

는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7조의6제3항 및 안 제27조의10제1항)

1)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었을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통보 및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처음 백지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면 1주일 이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1개월 이내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처음 신탁된 주식의 매각사실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백지신탁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백지신탁 중 신규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함 (안 제27조의9)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에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시행령 제27조의9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음

2) 백지신탁 계약 중인 신탁자의 이해관계자가 본인의 사업을 위해 신규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을 보유하도록 함

3) 백지신탁 계약 중인 신탁자의 이해관계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한되었던 주식회사 형태의 창업 등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됨

○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1항의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27조의11)

1) 개정 공직자윤리법에서 처음 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회피하도록 함(직무회피제도)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회피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각호(직무관련성 심사 기준)에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와 관련될 수 있는 직무들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함

3) 의무자가 스스로 회피해야할 직무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어 직무회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선물평가단 구성 근거 마련 및 선물이관 기간을 조정함 (안 제28조

제2항 및 안 제29조 제1항)

- 1) 선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시장가가 불명확한 선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 운영의 현실에 맞도록 선물이관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시장가가 불명확한 선물은 선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선물이관 시기를 반기 단위로 조정하되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 보고하도록 함
- 3) 선물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7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4. 06.
-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권 회복신청 시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3. 17.
- “사업재편”의 범위 명확화 (안 28조의2제5항)
 -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것을 의미함
- 등록면허세 추징규정 신설 (안 제28조의2제5항 단서)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

7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3. 17.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7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3. 17.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으로 약칭)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하여 적용중인 협정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 6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인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을 규정한 별표 3 중 석유화학제품 6개 품목(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에 대한 협정세율을 0%로 인하함

78. 관세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3. 17.

-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자기 소유 차량 등으로 직접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는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함
- 관세법인의 등록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함
-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과 의결 연장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직제 개편 등에 따라 관세사 시험이 면제되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과 부서를 추가함

79.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3. 17.
- 소규모 브랜드·위스키 제조업체의 초기 설비부담 경감을 위해 브랜드·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중 각각 25kl 이상으로 규정된 원액숙성용 나무통 총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총용량을 통합하여 원액숙성용 나무통과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의 합계 25kl 이상으로 시설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8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4. 08.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41호, 2016. 2. 3. 공포·시행)되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하위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동법 시행 규칙을 정비함

8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인) (대통령경호실)

- 예고일자 : 2016. 02. 26. • 마감일자 : 2016. 04. 06.
-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함
-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8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2. 29. • 마감일자 : 2016. 04. 11.

-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가감률을 일반국고 지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게 실손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을 재 정립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법령 제정으로 복구비 부담률 조정 및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고 추가지원 항목 중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확대 적용 (안 제4조 별표1)
-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 (안 제4조 별표1)
-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안 제4조 별표1)
- 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 연장(안 제9조)
- 재난피해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 마련 (안 제12조)
- 정책보험 가입자 등의 간접지원 적용을 위해 피해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문구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피해신고서)

8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2. 29.
- 마감일자 : 2016. 04. 11.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에 따라 국내·국제결혼중개업폐업신고 간소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폐업 신고시 시군구·세무서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으로 전달하여 일괄 처리함(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서식을 “제11호 서식”에서 “제12호 서식”으로 수정함(규칙 제14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별지서식 제2호(신고필증), 제6호(등록증) 및 제8호(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하고, 종사자명부 서식용지를 ‘신문용지’에서 ‘백상지’로 변경(별지서식 9호)함

8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3. 22.

-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담보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법률 제13975호, 2016.2.3. 공포)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일부를 개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

8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3. 17.

- 방위사업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계약, 협상 등의 법률적 문제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8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3. 14.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877호, 2016. 1. 8.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3% 인상)되어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3.4%를 일률적으로 산입

87. 향민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3. 10.
-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유류 공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소형선박 등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수요가 있는 항만의 경우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 확립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 (안 [별표 6] 개정)

88.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4. 12.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한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4. 12.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893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지정 유효기간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90.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인) (경찰청)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4. 11.

- “경찰복제 종합개선” 관련, 청록색 근무복 및 부속물(계급장 등) 등 개선된 복제를 반영하고, 특수복식 중 관광경찰대 신규 반영 및 경찰기동대원 간이기동복(긴팔)등을 추가하는 한편, 작전전경제도를 폐지하고 의무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6659호, 2015. 11. 20. 개정,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에 부합되도록 「의무경찰」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항제6호, 제4장 제목, 제19조, 제20조, 별표3 제2호, 별표5 제4호 라목, 별표7 제2호 자목)
- 경찰복제 종합개선사업으로 개선한 청록색 근무복 및 교통근무복, 부속물 등의 도형, 제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 개선된 근무복에 의한 동복 넥타이 착용 규정 변경(제15조제6호)
- 특수복식 중 신설된 관광경찰경대 복제 신규 반영과 경찰기동대원 간이긴동복(긴팔), 점퍼류 등을 추가함(안 별표7)

91.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02. • 마감일자 : 2016. 04. 12.
- 학교경영에 필요한 소송비 및 자문료 등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상의 계정과목 명세표에 각각 명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 1)수입항목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 2)지출항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 1)운영수익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을 “5200-5230.보조금수입”으로 변경하고,
 - 2)운영비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를 신설한다

92.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03. • 마감일자 : 2016. 04. 12.
-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

- 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비로써 이 규정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 [별표 3] 학교세입 예산과목에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수입” 신설
- [별표 4] 학교세출 예산과목에 “소송비 및 자문료” 신설

93. 「사학기관 제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03. ● 마감일자 : 2016. 04. 12.
- 학교경영에 필요한 소송비 및 자문료 등을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상의 계정과목 명세표에 각각 명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 1)수입항목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 을 “5200-5230.보조금수입” 으로 변경하고,
 - 2)지출항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 를 신설한다.
-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서
 - 1)운영수익의 “5200-5230.국고보조금수입” 을 “5200-5230.보조금수입” 으로 변경하고,
 - 2)운영비용에 “4200-4230-4234.소송비 및 자문료” 를 신설한다

94.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03. ● 마감일자 : 2016. 04. 12.
- 학교의 경영 및 학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비 세입 세출 시 관계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 회계운영의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소송경비를 학교운영 상 필요경비로써 이 영의 세입 세출 항목에 명시하고자 함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과정에서 생기는 수입'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 세입항목에 추가(안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
-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안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개정)

95.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6. 03. 03. • 마감일자 : 2016. 03. 23.
- 양성평등기본법 전면시행('15.7) 이후 일부 보완사항 처리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양성평등 추진체계에서 겸직이 가능한 직위의 기준을 통일하므로 업무의 효율화 도모
- 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여성사박물관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령 보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9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신속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1351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등 삭제(안 제39조의3)
-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관련 세부 절차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안 51조의6 등)
-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자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51조의13 ~ 16)

98.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7.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578호, 2015. 12. 22.)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조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으로 옮기기 위한 조문 정비를 실시하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존 근거조항(제20조)삭제 및 관련조문 자구 수정(안 제17·18·21조)
- 민관협의회의·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안 제3조, 제14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의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간사(미래부 또는 문체부 장관)가 회의 주재를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3조), 추진단 업무중 창조경제타운 운영지원을 혁신센터 운영지원으로 수

정(안 제14조)

99.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7.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고 사무처와 피해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 『10·27법난법』이 개정(법률 제13954호/2016.6.30. 시행) 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1) 차관급으로 되어있는 정부위원을 실·국장급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신고 및 심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위원 중 경찰청은 삭제(안 제2조 제1항 개정)
 - 2)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출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항 신설)
 - 3)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2조 제6항 신설)
- 의료지원금 신청대상을 이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자 중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한정(안 제9조 제1항 신설)

10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3.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941호, 2016. 2. 3. 공포·시행)되어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하위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함에 따른 동법 시행 규칙을 정비함

101.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2. 4. 국회 통과
※ ‘16. 7. 1. 개정법 발효
- 법 개정 내용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시행령 7개, 시행규칙 2개 조문 신설, 신청서 등 서식 3개 마련
-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정관변경, 등기 절차 규정
 - 신청시 필요한 서류(정관, 회의록 등) 및 신청서 양식 등 규정
- 합작참여자 요건 중 최근 5년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 ‘원인 행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화
- 합작법무법인 운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규정
 -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의 보험 가입 의무와 유사 내용 규정
 - ※ 보상청구 건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 한도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책정
-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신설
 - ※ 행자부 ‘15. 6. 30. 협조공문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도입 필요

1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01.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여 예약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법령 상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운영자의 사용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주차장 사용계약서 제출이 곤란한 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신고서류를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자

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주차대수,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주차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안 제60조제2항, 제66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0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되었던 “먹는 샘물” 제조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도록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4.11.28)에 따라 먹는 샘물과 동일하게 「먹는 물 관리법」의 수질 기준 등을 적용받는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에서도 “탄산수” 제조 허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0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최근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불법어업 통제능력이 부족한 국가의 수역에서 우리 국민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 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유통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것임
-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 등 부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 첨부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
- 해외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합법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의무화(안 제23조제1항제3호)

105.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15.12)되어 사업자의 조사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 하려는 것임
-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명한 보고를 원자력사업자가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1호)
-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를 원자력사업자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으 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2호)
- 법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이 행한 질문에 대 하여 원자력사업자의 관계자가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한 경우 과태료를 40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 2의 제3호)

106.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15.12.22. 개정, '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실시방법을 정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산후조리도우 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15.12.22. 개정, '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요금체계외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을 규정하 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를 신설하고, 난임시 술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관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2)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7조의6)
- (3)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 등 마련(안 제17조의7)
- (4)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7조의8)
- (5)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17조의9)
-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업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와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6호및 제7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절차, 변경신고 등 마련(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
- (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의3 내지 안 제8조의5)
- (3)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추가(안제19조)
- (4)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내지 안 제19조의4)

1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 제13조의3제5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1)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사용료는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 2)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 법 제16조의14제2항 신설로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의 사전검토의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3조의16, 안 제33조의17,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 1) 사전검토의 대상을 규정(안 제33조의16)“
- 2) “사전검토의 방법 및 비용 산정 기준 신설(안 제33조의17, 안 제33조의18, 별표 9 및 별지 제33호서식)“
-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33조의4제1항제3호 규정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을 삭제함(안 제33조의4제1항제3호)
-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등 주요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23호 서식)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시 환경성 정보의 일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0조 및 별지 제30호서식)

1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등의 위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한 녹색기업 재지정 금지 및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13781호, 2016. 1. 19. 공포, 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 전반은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1조의1제2항)
- 지정이 취소된 녹색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 재지정 신청이 제한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안 제22조의7제2항)
-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강화(안 제22조의10, 안 제22조의11제4항, 안 제22조의11제5항, 안 제22조의12, 안 제22조의13제2항, 안 제22조의14, 안 제22조의15)
 - 1)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 광고 시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내용, 매체의 종류, 횟수, 크기 등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의12)
 - 2)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을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제품 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규정(안 제22조의13제2항)
 - 3)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영업수익을 적용하는 자를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로 규정(안 제22조의14)
 - 4)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적용받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으로 정의(안 제22조의14)
 - 5)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별표를 신설하고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2조의15)

10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첨복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변경 승인 신청 규정 신설(규칙 제7조 신설)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자가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신청서를 지원사무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6. 03. 04. • 마감일자 : 2016. 04. 14.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및 승인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748호, 2016. 1. 6. 공포, 2016. 7.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제고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입주의 승인 신청 등 규정 신설(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주 승인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치하려는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입주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31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신속한 처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 승인(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입주 승인을 취소(소규모 생산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요건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함

○ 권한의 위탁(안 제22조제2호 나목 신설)

법 제3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중 입주변경에 관한 승인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